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90

발의연월일: 2025. 1. 7.

발 의 자: 조계원·김문수·주철현

김우영 · 양문석 · 양부남

이기헌 • 민병덕 • 임오경

박지원 · 윤준병 · 이개호

소병훈 · 신정훈 · 민형배

이강일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는 영화의 흥행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인식되고, 관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하지만 최근 영화입장권 결제 금액과 전송된 통합전송망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통합전산망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검증 업무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영화진흥위원회가 검증 결과 자료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전산 망에 전송한 사례를 적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으로써 영화상영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를 "그 밖에"로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전산망에 전송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있다.
-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 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 3.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 4. 그 밖에 통합전산망에 전송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
- ⑥ 제4항제3호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영화진흥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제3항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범죄혐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	제39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
산망) ① ~ ③ (생 략)	산망)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
	전산망에 전송된 자료의 정확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2.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3.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
	<u>는 서류검사</u>
	4. 그 밖에 통합전산망에 전송
	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u><신 설></u>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
	항에 따른 업무를 영화진흥위
	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
	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
<u><신 설></u>	⑥ 제4항제3호에 따라 현장출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가 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입	또는	는 서류	검사를	하는	사람
은	ユ	권한을	표시ㅎ	h는 중	증표를
	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
여) : 현	<u>한다.</u>			

①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영화진흥위원회는 제4항 에 따른 조치 결과 제3항을 위 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보고하고, 범죄혐위가 있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u>(8)</u>	<u>ユ</u>	밖에	 	 	